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대안)

의안번호	제350호
의결년월일	97. 12. 27. (제57회)

제출년월일 : 97. 12. 24.

제 출 자 :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97. 6. 30. 서영석(고강본동) 의원 외 30인이 의원 발의하여 97. 7. 8. 제54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계류시켰던 것을
- 97. 12. 10. 제57회 정기회 제8차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재차 심의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음

2. 대안의 제안이유

- 부천시 5,000여 장애인에게 자활의지를 북돋아주는 차원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원칙론에는 이의가 없으나
- 똑같은 처지인 모자가정세대의 경우 학비지원 이외는 생활비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어
- 장애인을 포함한 모자가정세대 그리고 노인들에게까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여 줌으로써 장애인에게만 국한하지 말고 어렵게 살고 있는 많은 부천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대안을 제출하게 되었음

3. 주요골자

-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및 노인복지법 제15조, 모자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조례설치 근거 마련(제1조, 목적)
- 우선허가 :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세대(제5조 : 우선허가)
- 이미 계약되어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그 효력을 인정(부칙 제2항)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제1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 노인(노인복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 모자가정(모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데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1.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전공고) ①시장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이를 시보, 반회보 등에 게재, 사전 공고하여야 하며 시의 관련업무 담당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통보를 받은 담당과에서는 설치 희망자를 파악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세대주로 하며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허가)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에게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한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자는 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하고자 할 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업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이 필요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 기타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수도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7. 6. 30.

나. 제 안 자 : 서영석 의원 외 30인 발의

다. 회부일자 : 1997. 7. 2.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97. 7. 8.) 상정

○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8차 환경복지위원회(97. 12. 10.)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김광희 의원)

가. 제안이유

○ 부천시 5,000여 장애인에게 자활의지를 북돋아주는 차원에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원칙론에는 이의가 없으나

○ 더 어렵게 살아갈지도 모르는 모자가정세대나 불우노인들에게까지 혜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판단하여 대안을 제출하게 되었음

나. 주요골자

○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및 노인복지법 제15조, 모자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조례설치 근거법 마련(제1조 목적)

○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세대의 허가신청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우선 허가토록 한다는 내용 명시

○ 이미 계약되어 영업중인 자에 대한 영업권 보호(부칙 제2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10㎡ 이하 매점에만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 10㎡ 이하로 제한한 것은 영세한 장애인들에게 매점을 주고자 하는 것임.
○ 기존 영업자에 대한 대안은?	○ 기록권을 인정해 주어야 하며 신규 신축건물에 한하여 적용함이 타당(부칙 제2항).
○ 허가를 득한 영업자들이 권리금을 받고 파는 것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좋겠음.	○ 조례상(안제6조)에 허가자 마음대로 양도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였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서영석 의원 발의안은 장애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조례로 자칫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대안으로 내놓은 조례안은 장애인, 모자가정세대, 불우노인에게까지 혜택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합리적인 조례라 판단됨

나. 반대토론

- 해당사항 없음

5.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